

#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지

차수	33차 정기
일시	18. 10. 29 18 : 30
장소	총학생회실

참석확인 (13/13)

간호	경경	공대	사범	사과	약학	예술	인문	의학	자연	동연	부총	총
○	○	○	○	○	○	○	○	○	○	○	○	○

## □ 보고 안건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인 위촉(12단위 중 12단위 동의로 가결)

:총학생회 집행국 기획국장 표다빈(경영15),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 성평등위원장 박지수(사북15)

### 2. 61대 총학생회 선거

: 10월 29일(오늘) 선거일정공고 업로드 완료. 오프라인 자보 게시 완료.

## □ 논의 안건

### 1. 61대 총학생회 선거

: 선거인 명부 확정 작업 착수 필요. 단과대별로 나누어 파일 송부할 것이며, 교학지원팀에서 명단을 받아 비교 후 각 단대별로 체크/수정 후 회신할 것. 보안 주의 요망.

11월 5일, 단대별로 송부할 것이며 11월 7일까지 정리 이후 최신, 해당 파일 취합 후 동아리 연합회 송부할 것이며 9일까지 동연→총학생회 회신 요망.

-동아리연합회: 분과별 투표인원 설정 문제로 일정 맞추기 어려울 수 있음.(총학생회: 문제 발생 시 재논의 진행.)

-약학대학: 개인정보 관련 사유로 열람 불허될 경우? (총학생회: 선거 관련 열람은 대부분 허가받으나, 문제가 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작성 이후 작성자만 열람하여 수정하면 될 것. 집행부 또는 단운위 등, 서약서 미작성자와 명단 공유 불가.)

### 2. 의학·약학·간호대학 선거인명부 관련 논의

: 해당 단위, 일정 상 선거 일정 내 투표참여 불가 확률 높음.

-약학대학: 6학년의 경우 학교에 공식적인 수업 없음. 국시준비자의 경우 학교 재학으로는 되어있으나 다니지 않는 경우 多. 선례와 동일하게 투표 할 경우 분모 분자에 더해지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총학생회: 단과대학별 명단 조정시 해당부분 조정하여 회신 요망.)

-인문대학: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 학생 기만으로 느껴짐. (자연과학대학: 회칙에 없으나 선례 존재. 관련 부분 동일 처리에 동의.//간호대학: 작년의 경우 실습 시기가 선거일정과 달라 문제없었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모두 세칙에 기입하기는 어려움. 미기재된 부분은 세칙에 따라 선관위 합의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사회과학대학: 투표권 자체가 말소되지 않으므로 문제없을 것.//공과대학: 유동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칙에 확정하기보다는 선관위 합의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동아리연합회: 세칙에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후 동연 선거시행세칙을 참조하여 '실질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자는 유권자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등으로 세칙을 개정하고 매 선거마다 '실질

적인 활동 불가'의 범주를 정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선례에 따르는 것이 타당.//자연과학대학: 중운위과 중선관위의 권위 또는 권한에 따르면 특정 목적을 위한 집행 시 세칙에서 어긋나거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힘이 있음.//사회과학대학: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으나, 현 안은 투표권 자체의 말소를 다루는 것이 아님. 합의해서 정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인문대학: 원칙적으로 유권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투표할 경우 인정한다는 워딩을 취하게 되는 것. 근본적으로 회칙을 어기는 것.//동아리연합회: 예외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중운위가 있는 것. 현 상황이 실질적으로 표를 행사하기에 열악한 상황인 것에는 모두 동의. 회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상황에 대한 개선책이 존재해야 하나 현재 당장 개선 어려움. 지속적인 선례가 존재했던 만큼 명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중선관위 논의로 확정 가능함.//자연과학대학: 새로운 방법 제시,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도록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떠한지?(총학생회: 시스템 상 투표 진행 이후 나중에 그 투표분을 집어넣는 등의 변경은 어려움. 부재자 투표가 진행될 경우 그 방식을 합의하고 실제 집행을 위해 논의해야 하나 시간/인력의 문제 존재.)//총학생회: 유동적인 상황에 대해 중운위, 중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음.//약학대학: 열 개 이상의 병원, 각 제약회사, 약국 등 전국 각지에 실습처 존재. 이 부분에 대해 오프라인 투표를 설치하여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도 선례가 중요 요소로 작용되므로 명확한 세칙이 없다면 선례를 근거로 판단, 합의할 수 있음.//동아리연합회/공과대학: 예외항목의 추가라 보는 것이 타당함.//동아리연합회: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라 세칙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세칙에 없는 부분에 대해 중선관위 의결로 진행되는 것이라 보는 것 역시 타당. 학생 기만으로 느껴진다면 이 방식에 대해 중운위 의결 내용과 진행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우려를 덜 수 있음.//자연과학대학: 회칙에 없는 부분에 대한 중선관위의 해석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기준을 삼는 것이 중요. 중선관위 논의 때 재논의하여 확정할 필요.//공과대학: 회칙에 따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 휴학과 8차를 해석하는 방법상 각 단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중선관위에서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에 문제 없을 것.//인문대학: 유권자 수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 있음.//사회과학대학: 기본적으로 재학생을 회원 대상으로 하는 총학생회칙 존재하므로 논의여지 크지 않음. 또한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논의 후 합의할 여지 충분.//간호대학: 현 선거원칙, 구성원의 책임에 의하여 투표를 하는 사람들에게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는 똑같이 피선거인에게도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무 근거가 됨. 피선거인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위해 실 투표 불가자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것.//총학생회: 유권자 데이터 차후 합산에 대해 재문의할 것.//사회과학대학: 의·약·간의 실습기간?(의과대학: 중대병원에서 모두 실시. 투표 가능 확률 높음./간호대학: 2주 실습, 2주 수업. 올해의 경우 실습기간이 선거기간과 겹침. 3~4학년 전반적으로 모두 실습에 참여하므로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이 투표참여 불가할 수 있음./약학대학: 6학년으로 재학하는 1년간이 모두 실습기간. 실습지와 기간이 모두 상이하여 특정 기간 확정 어려움. 약 120명 내외.)//자연과학대학: 실질적으로 졸업이 불가하다 하여도 졸업예정증명서를 8차부터 모두 뽑을 수 있으므로 세칙 적용에 문제되지 않음.

→중앙운영위원회 34차 정기회의, 선거인명부 관련 의결 진행 예정.

### 3. 유학생 투표권 관련 논의

: 8차 이상 재학생과 동일, 투표를 할 경우 분자와 분모에 +1씩 되어 투표율에 합산되는 방식.

-사회과학대학: 선거철, 홍보물을 보고 내용을 해석하는 유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음. 선거시행세칙 개정 관련, 평등 선거 실현 방법 논의 필요. 가장 관건인 투표율과 평등선거 사이 조율이 중요할 것.

-인문대학: 실질적으로 투표가 불가한 회원의 경우와 유학생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 실질적으로 유학생을 다 포함하는 것이 학생회의 원칙. 인문대학의 경우 유학생을 빼고 논의하기 어려움.

-자연과학대학: 해당 부분 고려되어야 하나 실질적인 역량 부족.

-경영경제대학: 회칙 개정을 시작으로 지금부터 선거 문화 개선을 시도할 수는 있을 것. 다국어 홍보물 제작을 권유하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겠으나, 문화 정착 이전 원칙을 못 박아 바로 실천하려 한다면 현실적인 선거 진행 어려움. 선거 결과 자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 재고에는 긍정적이나 바로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생각.(인문대학: 단과대학 자체적으로 각 상황에 맞게 개선·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총학생회 선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됨.//경영경제대학: 각 단과대학의 유권자가 합산되어 총학생회 선거의 유권자가 되는 것.)

-사회과학대학: 현재 의견이 극명히 갈리므로 투표권 자체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 단계적으로 투표문화 형성에 대해 논의한 이후에 접근 가능한 문제.

-인문대학: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세칙. 세칙의 유권 해석, 유학생을 모두 유권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됨.

-동아리연합회: 실습생과 똑같이 예외 적용으로 분류할 수 있음. 유학생의 실제 등록 방법, 자치 참여 시스템의 존재가 진행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중운위가 바로 논의하여 적용할 수 없음. 근본적으로 '왜 유학생에 대한 유권자 적용이 내국인 재학생과 다른가?'의 이유를 먼저 파악한 후 논의해야 함.

-자연과학대학: 유학생 비율 지속 상승. 앞으로 중요한 유권자 집단이 될 수 있음. 향후 개선 필요.

-인문대학: 유학생이 언제부터 해당 방식으로 처리되었는가?(사회과학대학: 작년 중대신문 기사로 확인//총학생회: 언제 처음 그렇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다만 작년의 선례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 회칙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나, 투표율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움. (총학생회: 동시에 두 부분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려움.)

→중앙운영위원회 34차 정기회의, 선거인명부 관련 의결 진행 예정.

#### 4. 추천인명부 배부 관련 - 종선관위 상주 시간표 작성

: 공지방 투표 요망. 가능한 시간대 모두 중복투표 이후 시간표 작성/진행할 것.

#### 5. 투표 독려방법 논의

: 관련 물품 배부, 경품 지급 등 독려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성.

-경영경제대학: 투표와 관련하여 물질적인 보상을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 쉽게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

-자연과학대학: 투표 독려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함.(인문대학: 선관위의 선거참여 유도는 정당. 인문대학 선관위, 강의실 방문 등 진행하여 투표 독려할 것.)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전체, 투표 독려 영상 제작하는 것 어떠한지?

→전반적 동의, 영상 촬영자 섭외 논의해보고 투표로 영상 촬영 날짜 확정할 것.